

2021 - 1043

() () ()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181호(2013.06.13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,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동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와 종로구 건축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4월 8일
서울특별시 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나. 열람장소 :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(☎2133-5573)/ 종로구 건축과(☎2148-2812)

다. 열람내용

① 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결정 (변경)(안)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	종로구, 수송동 견지동 일대	66,698	-	66,698	최초결정일 -도시설계지구 : 1994.06. 13. (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189호) 구역변경일 : 2009. 12. 10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97호) 구역명 변경 : 2013. 06. 13.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1호)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4)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)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
라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「도시관리계획(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) 결정(변경)(안)」 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, 추후 절차 진행(업무추진) 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한옥건축자산과(☎2133-55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 - 1044

「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부재, 수취인 불명, 이사, 주소불명,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

2021년 4월 8일
서울특별시

1. 건 명 :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(자동차 운행의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(자동차의 운행의 제한)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3. 공시송달 대상 : <붙임> 참조
4. 공고기간 : 2021. 4. 8. ~ 2021. 4. 22.(15일간)
5. 의견제출 안내 : 위 공고대상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 - 가. 의견제출기간 : 2021. 4. 8. ~ 2021. 5. 7.
 - 나.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(서식은 별첨 ‘의견진술서 작성예시’ 참조), 의견제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.
 - 다. 의견제출처 및 의견제출방법
 - (의견제출처) : 주 소 :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(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1층 교통지도과 녹색교통과징팀)
 - 전화번호 : 02-2133-1335~1336
 - (의견제출 방법) : 팩스 제출 : 02-2133-1446, 이메일 제출 : green5@seoul.go.kr
 - 인터넷 제출 : <https://oksign.seoul.go.kr>
6. 유의사항
 - 가. 사전의견제출기한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과 녹색교통과징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에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.
 - 다.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7. 과태료 자진 납부
 - 납부기한 : 2021. 5. 7.